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837호 2023. 6. 1.(목)

## 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23-11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 ..... 1

## 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23-809호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2
- 사천시 공고 제2023-815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..... 12
- 사천시 공고 제2023-816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..... 2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사천시 고시 제2023-114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3. 6. 1.

## 사 천 시 장

승인번호 (연월일)	목 적	위 치	면적(㎡)	승인기간	피 승인자		비고
					주 소	성 명	
2023-12 (2023.5.18.)	구우진항 방파제 연장	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20-11번지선	1,808 (직접)	2023.05.18.~ 2053.05.17.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사천시장 (해양수산과장)	
2023-13 (2023.5.18.)	상촌항 물양장 확장	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206-23번지선	707 (직접)	2023.05.18.~ 2053.05.17.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사천시장 (해양수산과장)	
2023-14 (2023.5.25.)	대포항 부잔교 설치	사천시 대포동 438-6번지선	계: 826.5 -직접: 102.5 -간접: 724	2023.05.25.~ 2038.05.24.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사천시장 (해양수산과장)	
2023-15 (2023.5.25.)	중항항 부잔교 및 도교 설치	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105-5번지선	계: 925.7 -직접: 86.7 -간접: 839	2023.05.25.~ 2038.05.24.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사천시장 (해양수산과장)	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809호

「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미생물발효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태순환농업과 미생물발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(안 제명)

나. 법인의 명칭 변경(안 제1조 및 제3조)

다.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변경 및 명확화(안 제6조)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(안 제10조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미래농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 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미래농업과장)

(우편번호: 52538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, 전화: 831-3811,

FAX: 831-6052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「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##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23 - 제 호
--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5. .  
제 출 자: 미래농업과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미생물발효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태순환농업과 미생물발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(안 제명)

나. 법인의 명칭 변경(안 제1조 및 제3조)

다.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변경 및 명확화(안 제6조)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(안 제10조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공보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: 2023. 6. 1. ~ 2023. 6. 21.(20일)

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반영, 미반영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”을 “미생물발효재단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”을 “미생물발효재단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재단에는”을 “재단의 임원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으로”를 “이사 및 감사[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]는 공개모집 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”를 “이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대표이사·이사”를 “이사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”을 “시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생태순환농업 부흥과 미생물발효 산업육성을 위한 미생물의 연구·개발·산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사천시 <u>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</u>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재단 설립)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<u>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</u>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6조(임원) ① <u>재단에는</u>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으로</u> 제7조에 따른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미생물발효재단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재단 설립) ① ----- ----- <u>미생물발효재단</u>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임원) ① <u>재단의 임원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이사 및 감사[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</u></p>

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  
장이 임명한다.

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  
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⑤ 대표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기  
와 그 밖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  
으로 정한다.

제10조(재산의 출연 등) 사천시(이하  
“시”라 한다)는 재단의 설립·운영  
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  
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  
에 출연할 수 있다.

경우는 제외한다]는 공개모집 후 -  
-----.

④ 이사 -----  
-----.

⑤ 이사 -----  
-----  
-----.

제10조(재산의 출연 등) 시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9조(임원) ① 출자·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

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둔다. 다만,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·출연 기관별 형태,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

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

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
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출자·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·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. 이 경우 감사가 출자·출연 기관을 대표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815호

「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 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수탁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수탁자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, 행사, 강연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추가(안 제8조)
- 나. 회원 혜택(공통 혜택) 중 배지 증정 및 회원증 발급 삭제(별표 2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문화체육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 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문화체육과장)

(우편번호 : 52539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 2711, FAX : 831- 6013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##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3 -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5. .

제 출 자: 문화체육과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수탁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수탁자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, 행사, 강연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추가(안 제8조)
- 나. 회원 혜택(공통 혜택) 중 배지 증정 및 회원증 발급 삭제(별표 2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공보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: 2023. 5. . ~ 2022. 6. . (20일 이상)

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반영, 미반영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가목 중 “시가”를 “시 및 수탁자가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 <신설 2019.6.4.>

## 회원제별 회원자격, 혜택 및 감면

### ○ 개인회원

구 분	연회비	혜 택
일반	3만원	· 기획공연 10% 할인 (1인 2매) ·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· 회원무료초청공연 (연1회) ·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%할인
골드	5만원	· 기획공연 20% 할인 (1인 2매) ·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· 회원무료초청공연 (연1회) ·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%할인
VIP	10만원	· 기획공연 30% 할인 (1인 4매) ·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· 회원무료초청공연 (연1회) ·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%할인
청소년	5천원	· 기획공연 30% 할인 (1인 2매)

※ 개인회원의 경우 좌석의 30% 이내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(청소년 제외)

### ○ 공통 혜택

- 문화소식지, 공연 팸플릿 홍보물 무료 우편발송
- 모바일 공연·전시 정보 알리미(푸시 서비스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사용료 50퍼센트 감면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시가</u>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, 행사, 강연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8조(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시 및 수탁자가</u>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**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**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816호

「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사천시 문화예술회관 회원가입 시 홈페이지에 회원이 자동 등록·관리됨에 따라 회원 관리 방법의 현실화로 회원제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회원증의 발급 조항 삭제(안 제7조)
- 나. 회원증의 발급 서식 삭제(별지 제4호서식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문화체육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 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문화체육과장)

(우편번호 : 52539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 2711,

FAX : 831- 6013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##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	2023 - 제 호
--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5. .

제 출 자: 문화체육과장

#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사천시 문화예술회관 회원가입 시 홈페이지에 회원이 자동 등록·관리됨에 따라 회원 관리 방법의 현실화로 회원제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회원증의 발급 조항 삭제(안 제7조)

나. 회원증의 발급 서식 삭제(별지 제4호서식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공보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: 2023. 5. . ~ 2022. 6. . (20일 이상)

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반영, 미반영

# 사 천 시 공 보

제837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호를 삭제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7조(회원제의 운영방법)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유효기간, 가입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   략)</p> <p>4. <u>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시에는 회원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회원제의 운영방법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  제&gt;</u></p>